

의안번호	2207140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 2. 18.
추계번호	24G64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확대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추가, 고등학생 이하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식사대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고등학생 이하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 등을 상향조정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예능학원 및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조 6,776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조 427억원(연평균 1조 8,0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시 재정수입은 2026년 3,289억원 등 5년간 총 2조 833억원(연평균 4,167억원) 감소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시 재정수입은 2026년 186억원 등 5년간 총 226억원(연평균 1,130억원) 감소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시, 재정수입은 2026년 1조 3,301억원 등 5년간 총 4조 9,361억원(연평균 9,872억원) 감소
 - 고등학생 이하 교육비 지출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조정,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예능학원 및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시, 재정수입은 2027년 5,330억원 등 총 1조 9,103억원(연평균 4,776억원) 감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상향조정 (안 제12조제3호러목)	-3,289	-4,386	-4,386	-4,386	-4,386	-20,833	-4,167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안 제12조제3호머목)	-186	-243	-239	-233	-229	-1,130	-226
기본공제 확대 (안 제50조제1항)	-13,301	-9,513	-8,640	-8,846	-9,061	-49,361	-9,87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안 제59조의4제3항)	-	-5,330	-4,953	-4,571	-4,249	-19,103	-4,776
합계	-16,776	-19,472	-18,218	-18,036	-17,925	-90,427	-18,085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제3호 러목 (비과세소득)	○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확대 - (현행)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가 받는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식사대									
2	안 제12조제3호 머목 (비과세소득)	○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개정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 - (현행) 20세 이하 → (개정안) 25세 이하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5세 이하인 사람,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									
4	안 제59조의4 제3항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상향 및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공제 신설 - (현행)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고등학생 이하 300만원/인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 - (개정안)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등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고등학생 이하 500만원/인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 대상범위</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신설)</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등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td></tr> <tr> <td>세액공제 한도</td><td>본인 무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학생 900만원/인(대학원생 비대상)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인</td><td>(좌동)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인</td></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범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신설)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등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본인 무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학생 900만원/인(대학원생 비대상)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인	(좌동)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인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범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신설)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등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본인 무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학생 900만원/인(대학원생 비대상)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인	(좌동) 고등학생 이하 500만원/인									

주: 1) 동 법안이 발의된 2024.12.31. 기준 현행 제도이며, 2025.1.1.부터는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보육수당은 20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출산수당은 전액 비과세 되도록 변경하였음(다만, 동 비용추계서는 2024.12.31. 발의한 법안을 전제로 추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러목 (비과세소득)	○	
2	안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	
3	안 제50조1항 (기본공제)	○	—
4	안 제59조의4제3항(특별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식사대 비과세 한도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며, 부칙에 의해 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식사대 관련 비과세소득은 동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하며,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은 동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동법은 2025년 중 통과되며 2026.1.1.부터 공포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4.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1인당 비과세식대는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월 20만원 → 월 30만원으로 1.5배 증가 가정) 만큼 증가한다고 전제

- 동 법안에서는 비과세식대의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식사대’로 하고 있어 동 비용추계에서는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함
- 총급여구간별 1인당 비과세식대 평균액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5년간 2023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
 - 비과세식대 자료는 2023년 귀속분부터 국세통계연보에서 이용가능

-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1인당 보육수당액은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월 20만원 → 월 30만원으로 1.5배 증가 가정) 만큼 증가 전제
 - 동 법안에서는 출산·보육수당 의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수당 ’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출산·보육수당 ’로 하고 있어 동 비용추계에서는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함
 - 2024년부터 1인당 출산·보육수당 한도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기준 1인당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금액을 추정, 향후 5년간 동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
 - 2024년 귀속분부터 출산·보육수당 자료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 2025년 귀속분부터는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산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폐지(월 20만원 → 전액)하되, 보육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동일
-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

- 개정안의 부칙(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징수기준)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총 세수변화분 추계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과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연동¹⁾되어있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완화되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의 신청자수 및 공제대상 자녀수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1)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개정안의 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
 - 개정안이 2025년 중 의결될 경우 2026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되어 2027년 연말정산부터 감면효과가 발생(징수 기준)
 -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안 부칙 제1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 제5조)
 - 이에 따라 동법은 2025년 중 통과되며 2026.1.1.부터 공포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4.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교육비와 개정안에 의해 동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사교육비를 나누어 추계함
 -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지급한 공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사교육비 등의 지출액임²⁾
 - 개정안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예능학원 사교육비,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사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고등학생 이하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 개정안 중 취학전 아동 예능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는 현재 관련 공식자료가 집계되고 있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통계청은 2024년부터 6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생 또는 가정양육 중인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유아사교육비조사」 사업 진행 중 (※조사기간 2024.9.30.~10.17)
-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2)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평생교육시설(동 나목), 국외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대학교)(동 다목),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동 라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식사대 비과세 한도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약 4,386억원의 근로소득세수 감소가 예상

- 국세청의 현행 식사대 비과세액('23년 귀속소득 기준)에 대한 총급여구간별 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 보육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월 20만원 → 월 30만원으로 1.5배 증가 가정)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계

[표 2]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귀속연도) 기준

총급여 규모	공제 인원 ¹⁾ (A) 명	1인당 평균 비과세액 (백만원)			실효세율 ²⁾ (E) %	1인당 세수효과 (F=D×E) 백만원	총 세수효과 (G=A×F) 억원
		현행 (B)	개정안 (C)	차이 (D=C-B)			
전체	7,115,108	1.67	2.51	0.84	12.28	0.10	4,385.66
1천만 이하	1	—	—	0.00	18.87	0.00	—
1.5천만 이하	61,485	0.81	1.22	0.41	0.21	0.00	0.54
2천만 이하	316,201	0.97	1.45	0.48	0.90	0.00	13.72
3천만 이하	1,236,658	1.39	2.08	0.69	1.60	0.01	137.09
4천만 이하	1,176,165	1.62	2.43	0.81	3.06	0.02	291.79
4.5천만 이하	520,864	1.71	2.57	0.86	4.62	0.04	206.30
5천만 이하	469,889	1.76	2.64	0.88	5.59	0.05	230.88
6천만 이하	789,682	1.80	2.70	0.90	6.84	0.06	487.33
8천만 이하	1,127,049	1.83	2.75	0.92	8.78	0.08	906.52
1억 이하	691,665	1.85	2.77	0.92	11.60	0.11	742.34
2억 이하	642,411	1.98	2.98	0.99	17.76	0.18	1,131.84
3억 이하	55,616	1.99	2.99	1.00	26.69	0.27	147.96
5억 이하	19,408	1.98	2.97	0.99	30.94	0.31	59.44
10억 이하	6,207	2.07	3.10	1.03	34.55	0.36	22.14
10억 초과	1,807	2.15	3.23	1.08	40.06	0.43	7.79

주: 1) 국세통계연보 비과세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 2023년 귀속기준

2) 실효세율은 과세표준대비 결정세액 비율

자료: 「2024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약 132억원의 근로소득세수 감소가 예상

- 국세청의 현행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액('23년 귀속소득 기준)에 대한 과총급여구간별 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 보육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월 20만원 → 월 30만원으로 1.5배 증가 가정)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계

[표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귀속연도) 기준

총급여 규모	공제 인원 ¹⁾ (A) 명	1인당 평균 비과세액 (백만원)			실효세율 ²⁾ (E) %	1인당 세수효과 (F=D×E) 백만원	총 세수감소효 과 (G=A×F) 억원
		현행 (B)	개정안 (C)	차이 (D=C-B)			
전체	376,645	1.52	2.28	0.76	12.28	0.09	264.5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295	0.75	1.12	0.37	0.21	0.00	0.0
2천만 이하	2,106	0.97	1.45	0.48	0.90	0.00	0.1
3천만 이하	11,782	1.33	1.99	0.66	1.60	0.01	1.3
4천만 이하	23,385	1.38	2.07	0.69	3.06	0.02	4.9
4.5천만 이하	19,893	1.40	2.10	0.70	4.62	0.03	6.4
5천만 이하	28,219	1.39	2.08	0.69	5.59	0.04	10.9
6천만 이하	78,600	1.42	2.13	0.71	6.84	0.05	38.2
8천만 이하	122,743	1.54	2.32	0.77	8.78	0.07	83.3
1억 이하	44,667	1.66	2.48	0.83	11.60	0.10	42.9
2억 이하	40,476	1.79	2.69	0.90	17.76	0.16	64.5
3억 이하	3,043	1.79	2.69	0.90	26.69	0.24	7.3
5억 이하	1,046	2.00	3.00	1.00	30.94	0.31	3.2
10억 이하	304	2.07	3.11	1.04	34.55	0.36	1.1
10억 초과	86	2.23	3.35	1.12	40.06	0.45	0.4

주: 1) 국세통계연보 비과세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 2023년 귀속기준

2) 실효세율은 과세표준대비 결정세액 비율

자료: 「2024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5년간 대상 인원수 추정) 향후 5년간 대상 보육수당 비과세 신청 인원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년 기준)자료의 증가율을 활용해 추정

- 2023년 기준 자녀수별 보육수당 비과세 신청 인원 추정치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중 미혼자녀 있는 가구(가구주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향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 가구주 연령을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제한한 후, 해당 가구의 향후 증가율을 사용
 -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2023년 귀속기준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출산·보육수당 신청 인원 대비 신청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의 비중은 각각 98.2%에 달함
- 향후 5년간 총급여구간별 인원 비중은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4]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 2023~2029

(단위: 만가구)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미혼자녀 있는 가구 (가구주 연령 30세 ~60세)	631.8 (-2.8)	617.9 (-2.2)	604.7 (-2.1)	592.3 (-2.1)	580.6 (-2.0)	570.0 (-1.8)	557.2 (-2.3)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미혼자녀 있는 가구는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부(모)의 합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전국편, 2024.9

- (귀속기준) 식사대 비과세 한도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4,63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3,120억원(연평균 △4,6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세수감소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음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상향조정	-4,386	-4,386	-4,386	-4,386	-4,386	-21,928	-4,386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248	-243	-239	-233	-229	-1,192	-238
합계	-4,634	-4,629	-4,624	-4,619	-4,614	-23,120	-4,624

□ (징수기준) 식사대 비과세 한도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3,47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1,961억원(연평균 △4,3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6.4.1.부터 지급받는 식사대 관련 비과세소득 및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소득분부터 한도 상향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세수감소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음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징수 기준)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상향조정	-3,289	-4,386	-4,386	-4,386	-4,386	-20,832	-4,166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186	-243	-239	-233	-229	-1,130	-226
합계	-3,475	-4,629	-4,624	-4,619	-4,614	-21,961	-4,392

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기준 상향조정

(1) 감면 실적

- (기본공제) 2023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기본공제 규모는 각각 36.5조원, 27.0조원으로 각각 2018~2023년 동안 연평균 2.4%, 8.4% 증가

[표 7]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12,109	12,237	12,916	13,629	13,959	12,970
(증가율)	(6.7%)	(1.1%)	(5.5%)	(5.5%)	(2.4%)	(4.2%)
공제금액	340,508	342,641	353,294	364,928	365,300	353,334
(증가율)	(4.9%)	(0.6%)	(3.1%)	(3.3%)	(0.1%)	(2.4%)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8]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적용인원	7,463	7,844	9,333	10,270	11,475	9,277
(증가율)	(8.1%)	(5.1%)	(19.0%)	(10.0%)	(11.7%)	(10.7%)
공제금액	189,941	193,490	223,350	240,548	269,772	223,420
(증가율)	(5.2%)	(1.9%)	(15.4%)	(7.7%)	(12.1%)	(8.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자(소득세 신고자) 수 및 공제금액 자료만을 제공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완화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수 및 이들의 공제대상 자녀 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통계연보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2년 귀속)³⁾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세수효과 추계

3) 재정패널조사 2023년 조사자료는 2022년 가계의 소득과 지출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연도

-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소득규모(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별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한 후, 개정안에 따른 소득규모별 공제금액 변화분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세수 효과 추계
-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실험분석결과 활용, 출산입양공제는 연령기준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3) 추계 결과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3년 기준 7,7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기본공제 규모 확대로 4,790억원, 자녀세액공제 규모 확대로 2,997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892	-1,288	-4,181
종합소득세	-1,897	-1,709	-3,606
합계	-4,790	-2,997	-7,787

주: 기본공제는 2023년 귀속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함에 따라 2023년 귀속 기준 세수효과를 제시하였고, 자녀세액공제는 2022년 귀속 자녀수별 세액공제금액 자료(국세청 제출)를 활용함에 따라 2022년 귀속 세수효과 추계 후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기본공제의 경우 최근 5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향후 제도변화를 반영한 증가율 적용
 - (기본공제) 근로소득세 0.7%, 종합소득세 5.4%의 증가율 적용
 - (자녀세액공제) 2019년부터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되었고, 2023년부터 8세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2022년 이후는 2019~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로 증가하고, 2023년은 추가적으로 7~25세 이상 인구에서 7세가 차지하는 비율(2023년 4.4%)만큼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에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활동상태, 소득, 가계지출현황, 복지현황 등을 조사하는 패널자료임

[표 10]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	세수효과
	기본공제금액 ¹⁾	기본공제금액 ²⁾	현행 공제금액 대비 변화율(%) ³⁾⁴⁾			
	A	$B=A \times (1+C\%)$	C	$D=B-A$	E	$F=-(D \times E)$
합계	277,964	290,340	-	12,376	-	-2,892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1,528	1,551	1.5	23	6%	-1
2천만 이하	7,331	7,526	2.7	195	6%	-12
3천만 이하	30,782	31,463	2.2	681	6%	-41
4천만 이하	33,540	34,275	2.2	736	15%	-110
4.5천만 이하	15,599	16,198	3.8	599	15%	-90
5천만 이하	16,800	17,322	3.1	521	15%	-78
6천만 이하	33,417	34,757	4.0	1,340	15%	-201
8천만 이하	55,958	58,538	4.6	2,579	24%	-619
1억 이하	37,415	39,865	6.5	2,450	24%	-588
2억 이하	41,398	44,295	7.0	2,897	35%	-1,014
3억 이하	2,960	3,212	8.5	252	38%	-96
5억 이하	931	1,011	8.5	79	40%	-32
10억 이하	259	281	8.5	22	42%	-9
10억 초과	44	48	8.5	4	45%	-2

주: 1)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기본공제금액 추정치로,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2023년 기준)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 산출

4)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분석이 불가하므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1]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종합소득 규모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변화분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	세수효과
	기본공제금액 ¹⁾	기본공제금액 ²⁾	현행 공제금액 대비 변화율(%) ³⁾⁴⁾			
	A	$B=A \times (1+C\%)$	C	$D=B-A$	E	$F=-(D \times E)$
합계	214,898	224,579	-	9,680	-	-1,897
1천만 이하	35,093	35,729	1.8	636	6%	-38
2천만 이하	47,140	48,336	2.5	1,195	6%	-72
3.5천만 이하	47,772	49,778	4.2	2,006	15%	-301
4천만 이하	10,626	11,369	7.0	743	15%	-111
5천만 이하	16,103	17,196	6.8	1,092	15%	-164
6천만 이하	11,656	12,126	4.0	470	24%	-113
8천만 이하	15,655	16,511	5.5	856	24%	-205
1억 이하	9,028	9,694	7.4	666	24%	-160
2억 이하	14,989	16,401	9.4	1,412	35%	-494
3억 이하	3,287	3,596	9.4	310	38%	-118
5억 이하	2,034	2,203	8.3	169	40%	-68
7억 이하	670	726	8.3	56	42%	-23
10억 이하	405	438	8.3	34	42%	-14
10억 초과	440	477	8.3	37	45%	-16

주: 1)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기본공제금액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에 결정세액 있는 자 수를 곱하여 추계
 2) 현행 종합소득규모별 기본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금액 변화율 산출
 4) 종합소득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분석이 불가하므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2]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공제금액 ¹⁾	개정안 공제금액 ²⁾	현행 대비 개정안의 변화율(%) ³⁾⁴⁾	세수효과
	A	B	C	D=A-B
합계	6,806	8,138	-	-1,332
1천만 이하	-	-	-	-
1.5천만 이하	-	-	-	-
2천만 이하	0.1	0.1	39.0	0
3천만 이하	32	43	32.1	-10
4천만 이하	221	260	17.5	-39
4.5천만 이하	233	286	22.8	-53
5천만 이하	341	395	15.9	-54
6천만 이하	882	1,033	17.2	-151
8천만 이하	1,991	2,317	16.4	-327
1억 이하	1,375	1,674	21.7	-298
2억 이하	1,563	1,928	23.3	-365
3억 이하	121	146	20.8	-25
5억 이하	35	42	20.8	-7
10억 이하	10	12	20.8	-2
10억 초과	2	2	20.8	0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세액공제금액 추정치로,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총급여규모별 자녀세액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4)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 수행이 불가하므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변화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표 13]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공제금액	개정안 공제금액 ¹⁾	현행 대비 개정안의 변화율(%) ²⁾³⁾	세수효과
	A	B	C	D=A-B
합계	4,874	6,625	-	-1,751
1천만 이하	488	661	35.6	-174
2천만 이하	960	1354	41.1	-394
3.5천만 이하	1,086	1540	41.8	-454
4천만 이하	247	374	51.7	-128
5천만 이하	383	517	35.3	-135
6천만 이하	301	348	15.6	-47
8천만 이하	442	542	22.7	-100
1억 이하	264	376	42.3	-112
2억 이하	457	601	31.5	-144
3억 이하	113	149	31.5	-36
5억 이하	75	90	20.1	-15
7억 이하	26	32	20.1	-5
10억 이하	16	20	20.1	-3
10억 초과	17	21	20.1	-3

주: 1)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종합소득규모별 자녀세액공제금액에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4) 종합소득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변화율의 추세가 일정치 않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 증가율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5조 1,813억원(연평균 8,63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4,252	-4,287	-4,324	-4,360	-4,397	-4,434	-26,053	-4,342
종합소득세	-3,890	-4,041	-4,200	-4,366	-4,540	-4,722	-25,760	-4,293
합계	-8,141	-8,329	-8,524	-8,726	-8,937	-9,156	-51,813	-8,636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⁴⁾ 소득세수는 2026년 1조 3,30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조 9,361억원(연평균 9,87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6년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26년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가 동시 발생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7,467	-5,395	-4,360	-4,397	-4,434	-26,053	-5,211
종합소득세	-5,834	-4,117	-4,280	-4,449	-4,627	-23,308	-4,662
합계	-13,301	-9,513	-8,640	-8,846	-9,061	-49,361	-9,872

주: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기준 완화 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규모도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 규모 및 자녀세액공제 규모 변화에 대한 세수변화분을 각각 추계하여 합산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기본공제대상자 수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4)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6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 다만, 2026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2026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12(9개월분)가 반영되고, 나머지 3/12(3개월분)은 2027년(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며, 2028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

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1) 조세지출 실적

- 2023년 교육세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적용인원 274.4만명, 공제세액 8,512억원으로 최근 3년간(2020~2023년) 적용인원(7.6% ↑) 및 공제세액(1.3% ↑) 증가 추세

[표 1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 추이(귀속년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¹⁾
적용인원	2,747	2,203	2,241	2,575	2,744	2,441
(증가율)	(4.5)	(△19.8)	(1.7)	(14.9)	(6.6)	(7.6)
공제세액	10,704	8,194	8,345	8,350	8,512	8,350
(증가율)	(△2.5)	(△23.4)	(1.8)	(0.1)	(13.6)	(1.3)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1) 2020~2023년 평균

자료: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세통계연보」 및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한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재정패널조사」(제16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귀속소득) 상의 가구별 소득, 교육비 지출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변경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을 추정함
 - －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따른 세부 공제내역이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⁵⁾
 - － 「재정패널조사」에는 조사되지 않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 내역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통계청·교육부)의 소득별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를

5)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상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사항을 모두 포함함

활용함⁶⁾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2022년 기준 「재정패널조사」의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한 추정치에 대해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의 관련 실적치와의 관계를 반영하여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공제를 신청한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나,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미시자료에는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및 결정세액 여부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재정패널조사」 추정치는 「국세통계연보」 실적치보다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치 대비 실적치 비율(이하 '조정비율') 등을 적용하여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후 2027년부터 5년 동안의 추계기간의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현행 세액공제 제도대상인 기존 교육비의 경우 만 0~18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⁷⁾을 적용하고,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교육비의 경우 만 7~12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⁸⁾을 적용함

6)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대비 학교급별 학원비 지출액 비중을 반영함

7) ('26년) -3.4%, ('27년) -3.7%, ('28년) -3.2%, ('29년) -3.1%, ('30년) -3.6%

8) ('26년) -5.7%, ('27년) -6.0%, ('28년) -7.6%, ('29년) -8.3%, ('30년) -7.5%

(3) 추계 결과

- (조정비율)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현행 제도 하의 「재정패널조사」 추정치에 대한 「국세통계연보」 실적치의 비율은 대상인원 전체는 0.82, 대상금액 전체는 0.53으로 계산됨

[표 17]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대상 인원·금액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2022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과세대상 총급여 구간	추정치(재정패널조사)			실적치(국세통계연보) ¹⁾			조정비율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A	B	C=B×0.15	D	E	F=E×0.15	G=D/A	H=E/B
전체	3,136	104,835	15,725	2,575	55,668	8,350	0.82	0.53
1천만 이하	46	744	112	—	—	—	—	—
1.5천만 이하	69	2,463	369	0	0	0	0.00	0.00
2천만 이하	78	1,527	229	1	6	1	0.02	0.00
3천만 이하	270	9,252	1,388	53	285	43	0.20	0.03
4천만 이하	332	10,546	1,582	148	1,389	208	0.45	0.13
4.5천만 이하	168	4,933	740	128	1,669	250	0.76	0.34
5천만 이하	165	5,044	757	157	2,307	346	0.95	0.46
6천만 이하	362	10,531	1,580	356	5,827	874	0.98	0.55
8천만 이하	608	18,532	2,780	663	12,545	1,882	1.09	0.68
1억 이하	460	16,354	2,453	451	11,838	1,776	0.98	0.72
2억 이하	530	22,932	3,440	543	16,744	2,512	1.02	0.73
3억 이하	31	1,379	207	49	2,002	300	1.59	1.45
5억 이하	9	430	65	16	711	107	1.84	1.65
10억 이하 ²⁾	6	133	20	6	268	40	1.00	2.01
10억 초과 ²⁾	1	35	5	1	77	12	1.00	2.20

주: 1) 실적치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결정세액 있는 자의 자료임

2) 과세대상 총급여 5억원 초과와 경우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조정비율을 계산함

자료: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차년도, 2024년) 및 「국세통계연보」(국세청, 2023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할 경우 소득세 수입 감소액은 6,480억원으로 추계됨

- (현행 공제한도 상향)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9,217억원으로 추계됨

- (공제대상 확대)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지출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5,775억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전체 규모는 1조 4,992억원이며 이에 따
른 조세지출액은 현행(8,512억원) 대비 6,48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표 18]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2023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총급여 구간	현행 (국세통계연보 실적치)			개정안							현행 대비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합계	세수효과
	D	E	F	I	J	K =J×0.15	L	M	N= M×0.15	O =K+N	P =F-O
	D	E	F	I	J	K =J×0.15	L	M	N= M×0.15	O =K+N	P =F-O
전체	2,744	56,747	8,512	2,744	61,450	9,217	3,592	38,498	5,775	14,992	-6,480
1천만 이하	-	-	-	-	-	-	-	-	-	-	-
15천만 이하	0	0	0	0	0	0	0	0	0	0	-0
2천만 이하	2	7	1	2	7	1	2	5	1	2	-1
3천만 이하	57	262	39	57	279	42	78	150	23	64	-25
4천만 이하	145	1,122	168	145	1,200	180	183	544	82	262	-93
45천만 이하	120	1,372	206	120	1,444	217	145	769	115	332	-126
5천만 이하	153	2,045	307	153	2,330	349	185	1,118	168	517	-210
6천만 이하	362	5,532	830	362	6,129	919	480	4,443	666	1,586	-756
8천만 이하	706	12,731	1,910	706	13,640	2,046	999	11,520	1,728	3,774	-1,864
1억 이하	508	12,487	1,873	508	13,601	2,040	657	8,467	1,270	3,310	-1,437
2억 이하	612	18,049	2,707	612	19,099	2,865	768	10,580	1,587	4,452	-1,744
3억 이하	53	2,045	307	53	2,605	391	68	903	136	526	-219
5억 이하	18	758	114	18	780	117	18	-	-	117	-3
10억 이하 ¹⁾	6	267	40	6	267	40	6	-	-	40	-
10억 초과 ¹⁾	1	68	10	1	68	10	1	-	-	10	-

주: 1) 과세대상 총급여 5억원 초과와 경우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조정비율을 계산함

2) 개정안에 따른 모든 총급여 구간별 1인당 세수효과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결정세액[「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개정안에 따른 공제
세액 모두를 세수효과가 되는 것으로 함

자료: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차년도, 2024년) 및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24년)를 바탕
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예능학원 및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 시설·예능학원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할 경우, 2027년 5,330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2조 3,079억원(연평균 4,616억원)으로 소득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취학전 아동 예능학원 교육비는 관련 공식자료 미집계로 추계 제외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안 제59조의4제3항)	-5,330	-4,953	-4,571	-4,249	-3,976	-23,079	-4,616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박지원	
	박성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